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201-2016-013104

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제2층 제203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6년6월10일	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7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 업무시설및공동주택및근린 생활시설 지1층 614.25㎡ 8층 460.98㎡ 1층 222.12㎡ 9층 460.98㎡ 2층 561.74㎡ 10층 460.98㎡ 3층 561.74㎡ 11층 460.98㎡ 4층 561.74㎡ 12층 460.98㎡ 5층 561.74㎡ 13층 460.98㎡ 6층 561.74㎡ 14층 460.98㎡ 7층 561.74㎡ 15층 390.52㎡	
2	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7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 업무시설및공동주택및근린 생활시설 지1층 614.25㎡ 8층 460.98㎡ 1층 222.12㎡ 9층 460.98㎡ 2층 561.74㎡ 10층 460.98㎡ 3층 561.74㎡ 11층 460.98㎡ 4층 561.74㎡ 12층	2018년6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8년7월9일 등기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제2층 제203호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			460.98㎡ 5층 561.74㎡ 13층 460.98㎡ 6층 561.74㎡ 14층 460.98㎡ 7층 561.74㎡ 15층 390.52㎡	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42-7	대	905㎡	2016년6월10일 등기
2	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	대	905㎡	2018년6월4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8년7월9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6년6월10일	제2층 제203호	철근콘크리트구조 61.70㎡	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905분의 10.08	2016년6월9일 대지권 2016년6월10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6년6월10일 제160947호		공유자 지분 100분의 99 조한준 550411-*****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41번길 3 (임학동)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제2층 제203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지분 100분의 1 조형준 610517-*****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19번길 42,201호(십정동,대준빌라)
1-1	금지사항등기	2016년6월10일 제160948호	2015년8월25일 임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	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임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
2	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	2016년12월5일 제459268호	2016년12월1일 매매	소유자 임재용 560729-*****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25,103동1504호(월곶동,월곶유호엔플러스빌 2차아파트) 거래가액 금149,000,000원
3	1-1번금지사항등기 말소			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2016년12월5일 등기
4	소유권이전	2021년10월29일 제443386호	2021년10월11일 매매	소유자 신희옥 890128-*****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92-3, 3동 401호(동산동,태영아트빌) 거래가액 금230,000,000원
5	강제경매개시결정	2022년3월29일 제99684호	2022년3월29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2타경507 669)	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114671-0026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(공덕동,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) (특수채권센터)
6	5번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말소	2022년5월31일 제187655호	2022년5월31일 취하	
7	압류	2024년10월22일 제387911호	2024년10월20일 압류(세무1과-1 8111)	권리자 서구(인천광역시) 2316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28일 제703747호	2025년2월28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507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(인천관리센터)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제2층 제203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955)	
9	압류	2025년10월21일 제5499275호	2025년10월21일 압류(세무2과-0 13905)	권리자 미추홀구(인천광역시) 2322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16년12월5일 제459269호	2016년12월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14,000,000원 채무자 임재용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25,103동1504호(월곶동, 월곶유호엔플러스빌 2차아파트)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110111-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(충정로1가) (상동역지점)
2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21년10월8일 제410565호	2021년10월8일 해지	
3	주택임차권	2023년7월24일 제266683호	2023년7월20일 인천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3카임2270)	임차보증금 금230,000,000원 범 위 제2층 제203호 61.70㎡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9월5일 주민등록일자 2021년10월8일 점유개시일자 2021년10월8일 확정일자 2021년9월17일 임차권자 정충식 920221-*****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7,103동 203호(송의동,대준블루온)
3-1				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3년7월24일 부기

-- 이 하 여 백 --

열람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201-2016-013104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42-7 대준블루온 제103동 제2층 제203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소	순위번호
신희옥 (소유자)	890128-*****	단독소유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92-3, 3동 401호 (동산동, 태영아트빌)	4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압류	2024년10월22일 제387911호	권리자 서구(인천광역시)	신희옥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28일 제703747호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	신희옥
9	압류	2025년10월21일 제5499275호	권리자 미추홀구(인천광역시)	신희옥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임차권설정	2023년7월24일 제266683호	임차보증금 금230,000,000원 임차권자 정충식	신희옥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